

科技總聯 27日 第11回 定總開催

—定款改正 및 任員改選—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회장 金允基)는 第11回 定期總會를 3月 27日 科學技術會館 會議室에서 開催키로 했다.

科技總聯 定期總會는 每年 2月 27日에 開催하였던바 今年에는 法令 第2814號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定款改正 作業을 하게되어 定期總會가 不得已 3月로 延期된바 있다

이번 11회 定期總會 日程을 살펴보면 3月27일 午後 2時 金允基會長의 開會辭에 이어 科學技術處 崔亨燮長官의 致辭가 있은후 議案審議가 始作된다.

議案으로는 75年度 科技總聯事業報告 및 決算報告 監查報告와 76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承認이 있은후 定款改正이 上程된다.

특히 이번 總會에서는 지난 2月로 任期가 만료된 科技總聯 任員陣의 改選이 있게 된다.

總會가 끝나면 이어서 特別講演이 있게되며 演題와 演士는 다음과 같다.

◎大陸棚開發과 石油探查(서울大 李漢基博士)
◎技術人力開發에 對하여(科技處 全相根室長)
또한 科技總聯 새 마을技術奉仕團이 製作한 弘報映畫 “새 마을과 과학기술”이 上映된다.

科技總聯 定款改正

法令 2814號에 따라 改正案 마련

政府는 法令 2814號를 1975年 12月 31日字로 公布하였다. 이 法은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이다. 따라서 科技總聯은 “公益法人”으로서 定款一部修正 및 改正新設이 不可避하다.

지난 2月 20日 科技總理事會는 總會 부의 사항을 審議하던 中 法令에 依한 定款改正 草案作業과 未決事項을 3人 委員을 選出 委任하였다.

이날 選出된 3人委員은 金東一 金海琳 李采鎬理事이다.

한편 3人委는 3次에 걸쳐 會合하고 지난 3月 16日 最終會議를 갖고 總會上程 議案審議를 召喚하였다.

다음은 科技總聯 定款 修正 및 改正案을 간추린 것이다.

定 款 改 正 案

1. 議決主文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定款改正案을 別添과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이 公布됨에 따라(法律 第2814號 1975. 12. 31) 本會定款을 部分改正하는 것임.

3. 主要骨字

① 本會 目的을 國內 및 在外 科學技術團體의 有機的인 團合으로 科學技術의 暢達을 圖謀하며 科學技術者의 資質과 地位向上을 期하고 會員團體를 育成하여 全國民의 科學化를 通하여 國家

發展에 寄與한다로 하였다.

② 本會 名稱은 外國에 對하여만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Societies(略稱 : KFST).

③ 事業에는 다음 事項을 追加(具體化).

- 科學技術에 關한 學會 및 團體의 育成.
- 科學技術에 關한 月刊雜誌와 各種刊行物의 發刊.
- 科學技術에 關한 資料蒐集과 調查研究.
- 地域社會 開發을 為한 技術支援.
- 科學技術暢達을 為한 風土造成事業.

削除한 事項은

○國內外 科學技術 團體間의 協同과 活動의 嘉勵 및 調整.

○產學協同에 關한 調查와 政策의 建議.

④ 任員의 數調整: 現在의 33名에서 18名으로.

⑤ 任員의 任期는 現在의 3年에서 2年으로 하며 다만 連任할 수 있다로 하였다.

⑥ 理事會 機能을 다음과 같이 具體化

○本會의 豈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產에 取得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事務總長의 認准.

○諸觀定의 制定.

○其他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必要한 會務를 審議하기 위하여 必要한 委員會를 둘수있다.

⑦ 理事會 召集의 特例를 다음과 같이 插入하였다.

(1)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10日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監事が 召集을 要求한 때.

(2)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하므로서 10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 할때에는 在籍理事 3分之 2以上的 贊成으

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3) 第2項의 依한 理事會는 出席者中 年長者の 司會로 議長을 選出한다.

⑧ 第20條(財源)을 削除하고 資產을 다음과 같이 具體화하여 插入하였다.

(1) 本會의 資產은 다음과 같다.

○本會所有의 動產과 不動產.

○基金.

○資產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會費.

○政府 및 公共團體의 補助金과 獎勵金.

○事業收益金.

○寄附金과 贊助金.

○外國政府와 機關에 依한 援助金.

○其他收入金.

(2) 資產의 區分에는

1) 本會의 資產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財產은 基本財產으로 한다.

○不動產.

○基金.

○普通資產으로서 理事會決議에 依하여 基本財產에 編入되는 資產.

2) 本會 資產中 前項各號 以外의 財產은 普通財產으로 한다.

⑨ 第27條(財產處理)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本會가 解散하였을 時 殘餘財產이 있을 時에는 清算人會의 決議에 依하여 國家에 歸屬시킨다.

⑩ 第28條(施行)을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本定款은 總會에서 通過한 後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받는 날부터 施行한다.

⑪ 第29條(附則) 1호에 다음 事項을 插入하였다.

1) 本會는 農村을 비롯한 地域社會開發에 必要한 技術을 支援하기 為하여 새마을 技術奉仕團을 設置한다. 奉仕團員은 本會會員團體의 會員과 奉仕團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로 한다.

奉仕團에 關한 諸觀定은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會長이 定한다.